## 보세구역 전달사항

\* 본 사항은 업무의 편리, 신속성율 위한 연락용 메일로서 공문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
('24.7.17. 보세화물 특별점검팀)

- 1. 최근 관내 보세구역에서 밀수입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불시점검·특별점검 등 보세창고에 대한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
- 2. 이에, 사전방지 및 감시단속 효율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보세구역 CCTV의 접속 정보를 기한 내 제출해주기시 바랍니다.

- 아 래 - <sup>24</sup>-기·26 CMS·Zim 되지 않아 있네.되지 않기 접속프로그램 및 방법 ID/PW 창고 내 CCTV 유무 제출불가사유

※ 기존 정보제공 보세구역도 접속권한 현행화를 위해 제출 요망

- □ 제출 기한 : 2024.7.26.(금)
- □ 제출 방법 : 이메일(816dldydgml@korea.kr)
- □ 제출 혜택 : 1) 보세구역 혀자정건 지정비율 축소
  - 2) 매년 실시하는 법규수행능력평가 가점 3점
  - 3) 특허 신규(갱신) 시, **창고 안 CCTV 시설 구비 시 가점** 5점

## □ 제출 근거 :

- 「관세법」제180조제2항 및 「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20조제1항제5호에 의거,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존재
- 「관세법」제164조 및「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4조에 의거, 세관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 및 유지 가능
- 「관세법」제203조 및 「종합보세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제35조에 의거, 세관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및 점검권한 존재

부산세관 보세화물 특별점검팀 (문의 : ☎051-620-6717)